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71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, 제2014-119호(2014.3.27.) 및 제2019-185호(2019.06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11호(2017.11.2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위치·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-2 일대 / 5,621.57㎡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더유니스타제삼차(주) 대표 박래영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4호
- 라.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4개월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7.11.17.

2. 공람개요

- 가. 공고기간 : 2021.02.03. ~ 2021.02.17.(14일간)
-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
- 다. 주요 변경내용 : 건축물 주용도 및 세대수 변경
 - 공동주택(아파트) 714세대 →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) 198세대 및 업무시설(오피스텔) 420호
- 라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- 마. 공고방법 : 구보 게재

3. 기타사항

-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,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